

부천시 공고 제2025-148호

「절골근린공원 조성사업」 편입 토지 및 물건 관련 협의 요청 공시송달 공고

부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「절골근린공원 조성사업」의 편입 토지 및 물건과 관련하여,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·거소불명 등으로 협의(통지)할 수 없는 아래의 공시송달 대상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토지보상법)』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17일
부 천 시 장

1. 공시송달내용 : 절골근린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및 물건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
 - 가. 협의 기간 : 2024. 12. 26.(목) ~ 2025. 2. 7.(금)
 - 나. 협의 장소 : 부천종합운동장 1층, 도시개발부
 - 다. 보상 방법 : 현금보상
 - 라. 보상 절차 :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
 - 마. 구비 서류
 -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- ②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 이력 포함)
 - ③ 본인의 예금통장(보상금 수령용) 사본 1부
 - ④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(인감증명서는 일반용 1통, 부동산 매도용 1통)
* 부천도시공사 매수자 인적사항 기입
 - ⑤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
 - ⑥ 필지별 토지대장 1통
 - ⑦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(토지 등기부등본)
 -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근거법규 : 「토지보상법」시행령 제4조 및 제8조
3. 공고기간 : 2025. 1. 17.(금) ~ 2025. 1. 31.(금) (14일 이상)
4. 공시송달 대상

소재지	지번	지목	전체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토지소유자		비고
					성명	주소	
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	산58-5	임	893	893	민경시 민병유 민병국	주소 미상	

5. 향후 처리 계획 :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은 「토지보상법」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
6. 기타 사항
- 가.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 함.
- 나.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도시공사 사업지원팀(☎ 032-340-0717, 0718)로 문의 바랍니다.

소관부서	도시계획과	담당자 직·성명	주무관 이 예 진	전화번호	032-625-3442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